

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-7호

「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13일  
강 원 도 지 사

##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개인정보 이용제한 등의 한계로 실질적 검증이 어려운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삭제하고, 기술장려금 지급 금액을 증액하여 강원도명장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도민의견 수렴 절차 삭제(안 제4조)
  - 「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연계 개정
- 기술장려금 지급 금액을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(안 제5조)
  -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토록 기술장려금을 증액하여 강원도명장 위상 제고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(참조:기업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《의견제출 및 문의처》

- 주 소 : (우)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, 강원도청 기업지원과
- 전 화 : 033-249-3471
- 팩 스 : 033-249-4105
- 이메일 : hb4963@korea.kr

### 4. 참고사항

-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(안) : 붙임

#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200만원씩”을 “500만원씩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u>제4조(도민의견 수렴) 도지사는</u>  <u>강원도명장 선정을 위해 후보자</u>  <u>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</u>  <u>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민의</u>  <u>견을 수렴할 수 있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제5조(증서 및 기술장려금) ① (생략)</p> <p>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연 <u>200만원씩</u> 2년간으로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</p>	<p>제5조(증서 및 기술장려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 -----  ----- <u>500만원씩</u>  -----  -----.</p>